

의안번호	2125779
의 퇴 인	양향자의원
회 답 일	2023. 12. 18.
추계번호	23A5010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6항 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제20조제7항 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○ 국가가 특화단지 조성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제6항 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0조제7항 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특화단지 조성(안 제20조제6항)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·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인프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특화단지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

-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법에 따른 첨단산업 투자·인력 지원을 추진할 계획¹⁾이나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은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법률로, 현 시점에서 산업별 지원 계획이나 지원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전임
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「산업단지환경조성」 예산안으로 387,197백만 원을 편성함

□ 특화단지 운영 지원(안 제20조제7항)

- 개정안은 기존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, 국가가 특화단지 조성·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비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
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²⁾ 및 별표3에 따르면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지표	산식 및 사용자료 등
1. 재정자주도	가. 계산식: $\{(\text{지방세수입} + \text{세외수입} + \text{지방교부세} + \text{재정보전금} + \text{조정교부금}) / \text{일반회계 예산규모}\} \times 100$ 나.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.
2.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	가. 계산식: $\{\text{분야별 세출예산 순계(純系) 규모(일반회계+특별회계)} / \text{세출예산 순계 규모(일반회계+특별회계)}\} \times 100$ 나.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(일반공공행정, 공공질서 및 안전, 교육, 문화 및 관광, 환경보호, 사회복지, 보건, 농림해양수산, 산업·중소기업, 수송 및 교통, 국토 및 지역개발, 과학기술, 예비비 및 기타)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. 다.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.

-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1) 산업통상자원부, “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8.4일 시행” 보도자료, 2022.8.3.

2) 제5조(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)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(이하 "인상보조율"이라 한다)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, 15퍼센트,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,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, 15퍼센트,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,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.

-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지원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 비용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져(재량지출)³⁾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「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」 및 「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」 사업에 각각 50,000백만원을 지원함

□ 이에 정부의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특화단지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은기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은기	02-6788-3750	ekkim@assembly.go.kr

3) 안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.